

감정평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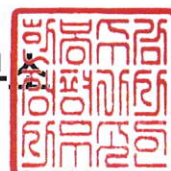
건명 강정수 외 1명 소유물건 (2024타경104396)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감정서번호 H2407-11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한봉수

한 봉 수




감정평가액	일억팔천오백팔십사만일천원정(₩185,841,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강정수 외 1명 (2024타경104396)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8.02	2024.08.02	2024.08.0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6,883	토지	6,883	27,000	185,841,000
합계					₩185,84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단 가	금 액	비 고
					공 부 (의 퇴)	사 정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592-1	임야	계획관리지역	6,883	6,883	27,000	185,841,000	
	합 계			이	하	여	백	₩185,84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부목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8월 02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08월 02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및 본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평가의 조건

·

6. 기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측량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와 유사한 통상의 광평수임야에는 관리상태 및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592-1	임야	6,883	계획관리	자연림	부정형 급경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A	부목리 133	1980	임야	토지임야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	7,530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월 01일임.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비고
A	경상남도 함안군 (24.01.01~24.08.02) (계획관리) 2024.01.01 ~ 2024.06.30 : 0.468 2024.06.01 ~ 2024.06.30 : 0.098 $(1 + 0.00468) * (1 + 0.00098 * 33/30)$ ≈ 1.00576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

기호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A	—	1.25	1.00	—	1.00	1.00	1.250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 28) 및 대법원판례(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 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부목리 ***	계획관리	임야	2022.04.29	경매	26,000	-
(2)	부목리 ***_*	계획관리	임야	2024.02.28	경매	25,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나) 인근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 목	거래시점	토지단가(원/㎡)	비고
#1	칠서면 대치리 ***_*	계획관리 임야	2021.03.09	25,840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가)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quad (\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quad (\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다)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1)

구분	단 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격차율	보정치 결정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26,000	1.02440	1.000	0.800	21,308	2.814	2.81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7,530	1.00576	—	—	7,573		
시점수정	경상남도 함안군 계획관리 2022.04.29 ~ 2024.08.02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	0.80	1.00	—	1.00	1.00	0.800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A	7,530	1.00576	1.000	1.250	2.81	26,601	2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비 고
#1	경상남도 함안군 (21.03.09~24.08.02) (계획관리) 2021.03.01 ~ 2021.03.31 : 0.339 2021.04.01 ~ 2021.04.30 : 0.311 2021.05.01 ~ 2021.05.31 : 0.310 2021.06.01 ~ 2021.06.30 : 0.190 2021.07.01 ~ 2021.07.31 : 0.186 2021.08.01 ~ 2021.08.31 : 0.234 2021.09.01 ~ 2021.09.30 : 0.140 2021.10.01 ~ 2021.10.31 : 0.199 2021.11.01 ~ 2021.11.30 : 0.258 2021.12.01 ~ 2021.12.31 : 0.154 2022.01.01 ~ 2022.12.31 : 2.309 2023.01.01 ~ 2023.12.31 : 0.479 2024.01.01 ~ 2024.06.30 : 0.468 2024.06.01 ~ 2024.06.30 : 0.098 $(1 + 0.00339 * 23/31) * (1 + 0.00311) * (1 + 0.00310) * (1 + 0.00190) * (1 + 0.00186) * (1 + 0.00234) * (1 + 0.00140) * (1 + 0.00199) * (1 + 0.00258) * (1 + 0.00154) * (1 + 0.02309) * (1 + 0.00479) * (1 + 0.00468) * (1 + 0.00098 * 33/30)$ ≒ 1.05724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기호	사례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1	—	1.15	0.90	—	1.00	1.00	1.035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기호	토지단가 (원/㎡)						
1	#1	25,840	1.000	1.05724	1.000	1.035	28,275	2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비고
1	27,000	28,000	-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적용단가(원/㎡)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27,000	6,883	185,84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185,841,000 

2. 기타 참고사항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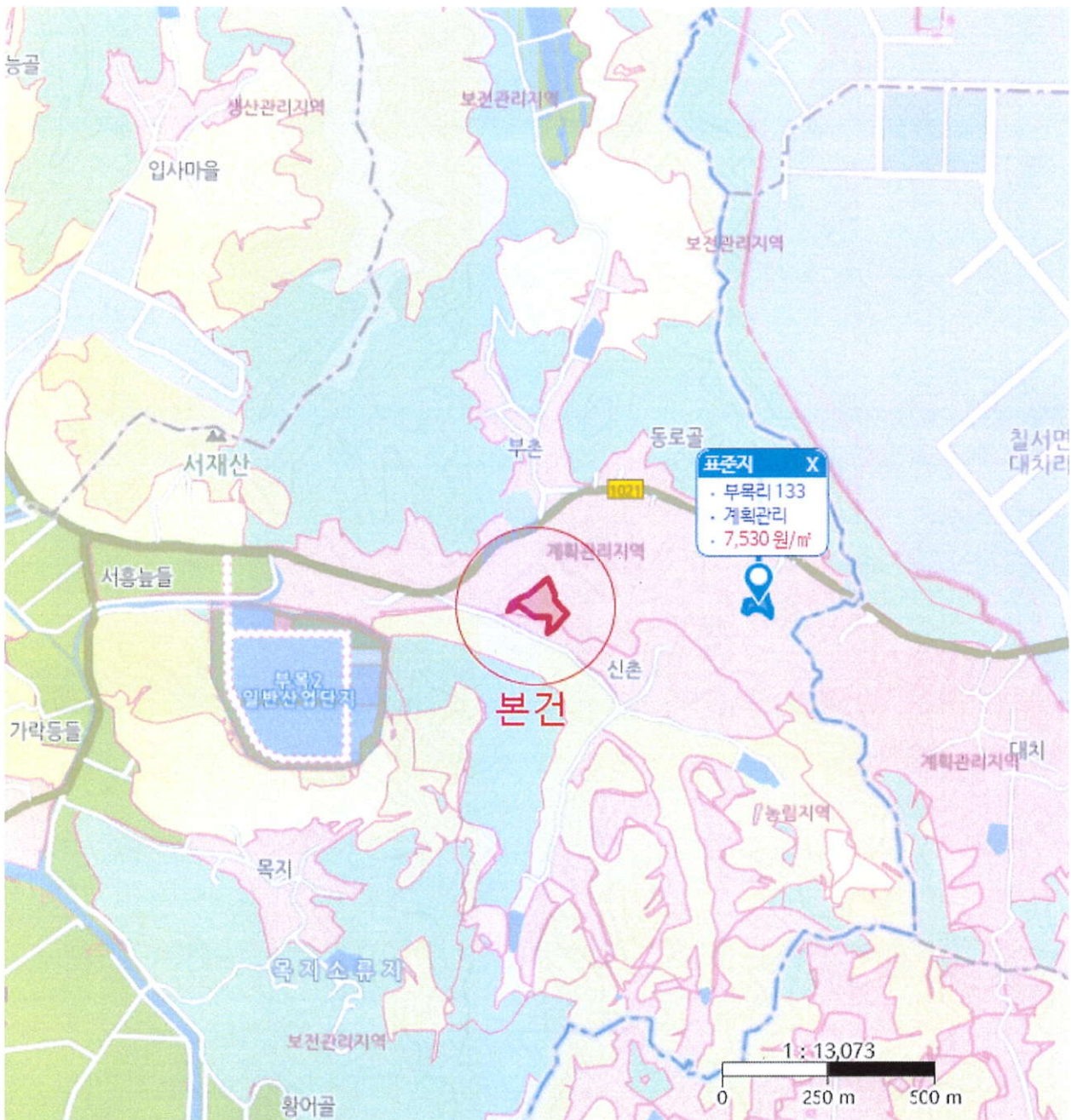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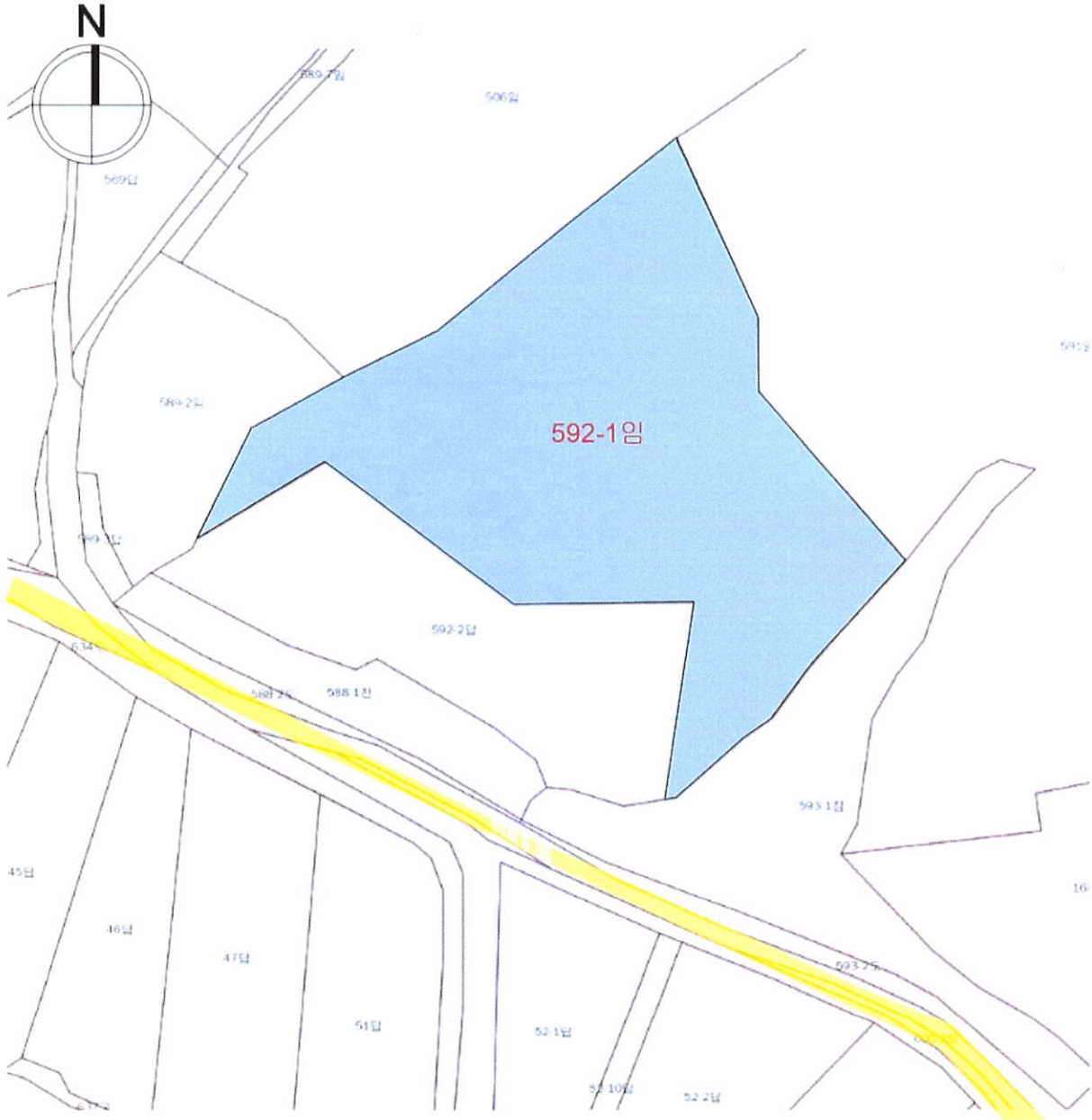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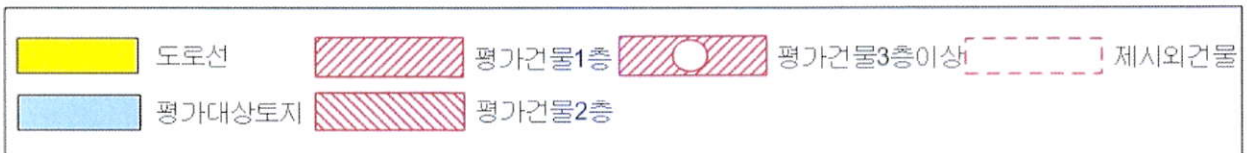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부목리 5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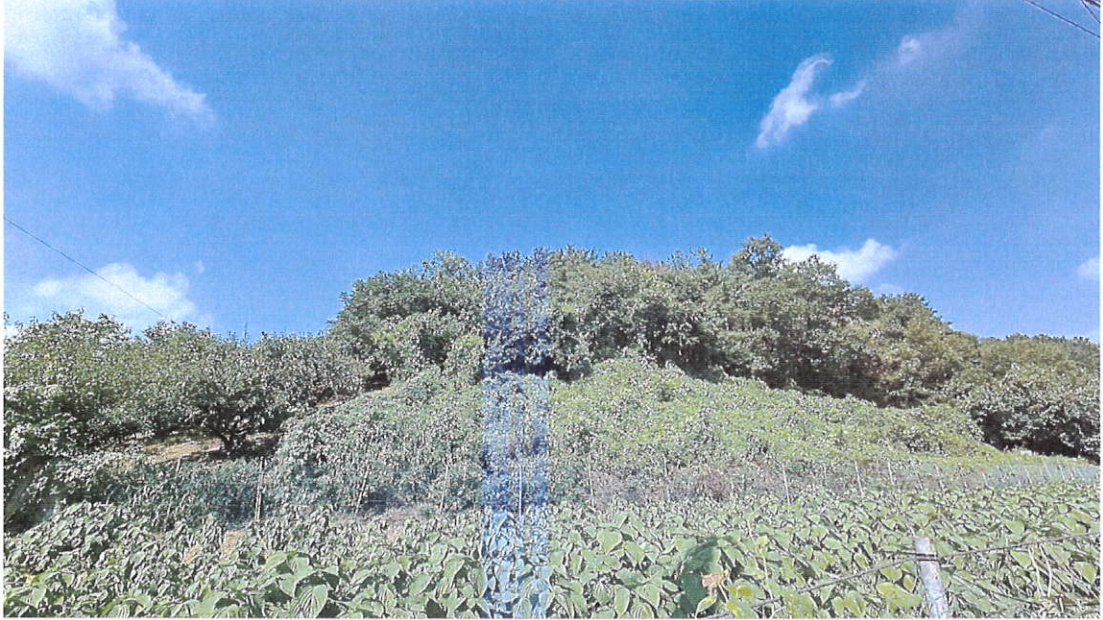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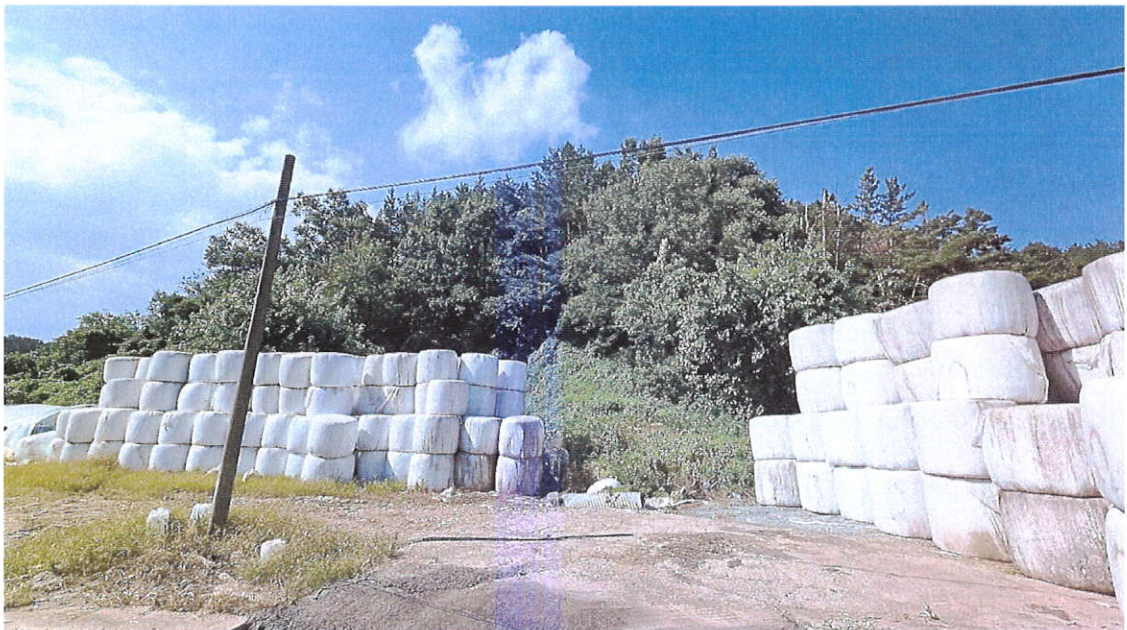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 진 용 지



본건 토지 사진



본건 토지 사진